



인도네시아 세무 정보

조세 사면의 후속 규제법 갱신

정부 및 국세청(DGT)은 조세 사면 프로그램 시행 후 다음과 같은 규정을 발표했다.

- a. 소득으로 간주되는 순자산에 대한 소득 공제 이는 정부규제 No. 36 of 2017 ("GR-36")에 의거하며 해당 규제에서는 국세청 규정 No. SE-24/PJ/2017 ("SE-24")에 따라서 비호폐상자산의 가치평가 가이드라인이 보다 상세하게 규정됨
- b. 조세 사면 시행 후 DGT의 감독 국세청 규정 No. SE-20/PJ/2017 ("SE-20")에 규정됨
- c. 조세 사면의 승인서 정정 절차는 국세청 규정 PER-14/PJ/2017 ("PER-14")에 규정됨

a. 소득으로 간주되는 순자산에 대한 소득 공

GR-36는 조세 사면 프로그램 이후에 특정 자산에 소득세의 부과를 규정하기 위해 발표되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납세자에게 적용된다:

1. 조세 사면에 참여한 납세자이지만 조세 사면의 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2. 조세 사면에 참여하지 않은 납세자이지만 소득세 신고에서 보고하지 않은 순자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1. 조세 사면 참여한 납세자 경우

이번호:

1. 조세 사면의 후속 규제법 갱신
 - a. 소득으로 간주되는 순자산에 대한 소득 공제
 - b. DGT의 감독
 - c. 조세 사면 승인의 정정 절차
2. 2017년 국가 예산에서, 특정 소득에 대한 정부의 소득세 연장
3. 수입과세, 수출 관세 및 세관 벌금의 이연

GR-36에서 규정하는 조세 사면에 참여한 납세자의 위반은 두가지 형태로 나뉜다

• *자산 송환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납세자*

사면대상자산(TA assets)을 최소 3년간 인도네시아에서 유지하지 않은 경우,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자산을 인도네시아로 송환하지 않은 경우, 또는 인도네시아로 자산을 송환했지만 송환된 자산을 3년간 인도네시아에 유지 및 투자하지 않은 경우, 신고서에서 보고된 추가 자산은 소득세 부과 대상("income tax base")으로 간주된다

사면대상자산의 일부만 위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자산의 나머지 부분에 문제가 없더라도) 신고서에서 보고된 전체 추가 자산은 소득세 대상으로 처리된다

• *신고서에서 순자산을 보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 한 납세자*

보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순자산은 아래의 경우가 해당되지만, 아래 사항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 조세 사면 개시일인 2016년 7월 1일 후에 납세자는 가장 최근의 소득 신고서를(일반적으로 2015 회계 연도) 제출하며, 국세청이 계산한 순자산 이동과 순이익에 신고서상의 자본증기분을 더한 것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한 납세자가 2016년 8월에 회계연도 2015에 대하여 제출한 소득 신고서상에는 전년 대비 순자산 변동은 20억 루피아이나, 순이익과 증기 자본 금액의 합은 15억 루피아 였다고 가정하자. 이 두 금액의 차이, 즉 5억 루피아는 소득으로 간주된다
- DGT에 의해 발행된 조세 사면 승인서의 수정으로 인하여, 보고되지 않거나 과소 신고된 자산.

DGT는 상기 순자산을 소득 대상으로 간주하는 기한을 정하지 않았다

2. 조세 사면에 참여하지 않은 납세자 경우

납세자가 198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 사이에 획득한 순자산이 있었지만 소득 신고서에 보고하지 않았고, 2019년 7월 1일 이전에 DGT가 발견하는 경우, 해당 보고 되지 않은 순자산은 소득으로 간주된다.

세율

이에 해당되는 모든 자산은 납세자의 소득으로 간주되며, 최종 분리 과세 및 벌금이 부과된다. 적용 세율은 아래와 같다

납세자	최종 세율
개인	25%
법인	30%
특정 납세자*)	12.5%

*) 12.5% 세율은 특정한 조건하에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조세 사면 이전의 회계연도에서, 사업 또는 프리랜서 업무로 종합소득을 수령한 개인 또는 법인 납세자는 최대 4,800,000,000 루피아 한도내의 금액에 대하여 적용 가능하다)

순자산의 가치

소득으로 간주되는 순자산 가치는 아래와 같이 결정된다.

- a. 현금 자산인 경우 액면가액
- b. 비회계상자산인 경우 DGT 평가가치
비회계상자산 가치를 결정하기 위해 DGT는 조세 사면 목적의 자산 가치 평가를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SE-24를 발표했다. 자산 종류, 평가방법, 평가절차 및 가치 평가 단계는 SE-24에 규정된다.

b. DGT의 감독

DGT는 조세 사면 프로그램 시행 후 납세자의 감독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위해 SE-20를 발표하였다. SE-20에서 DGT는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를 설정하였다:

1. 조세 사면에 참여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한 감독

DGT는 자산과 관련된 정보 및/또는 정보의 불일치에 대해 조세 사면에 참여하지 않은 납세자를 감독한다. 이 검토를 통하여 198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 사이에 납세자가 획득하였으나 소득신고서에 보고하지 않은 자산이 발견되는 경우, 이어서 DGT는 이를 납세자에게 세무 감사 지시서("SP2")를 발급하기 위한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
DGT는 마감 기한인 2019년 6월 30일 내에 SP2를 발행해야 한다.

2. 조세 사면에 참여한 납세자에 대한 감독

다음과 같은 측면에 중점을 둔다(우선 순위에 따라):

- a. 조세 사면 시행 후 월별 및 연간 납세의 준수,
- b. 신고서에 보고된 사면대상자산과 관련된 데이터 및 정보의 불일치

감독 활동 수행 시 DGT는 납세자의 모든 자산과 관련된 정보를 검토하고 비교하여 납세자에 세무조사를 실시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권고서를 발행할 것이다.

a. 조세 사면 승인의 정정 절차

PER-14는 납세자의 요청 또는 DGT에 의해 직무상으로 유발된 조세 사면 승인의 정정 절차를 규정하기 위하여 발표되었다. 정정 사유는 오타 및/또는 계산 오류로 제한된다.

오타는 자산 유형, 자산 가치, 부채 가치 및/또는 순자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오류이다. 한편 계산 오류는 다음과 같다.

- 금액의 덧셈 뺄셈 곱셈 및/또는 나눗셈
- 세율 적용
- 자산가치에서 차감 가능한 부채(한계금액)의 계산 오류로 설명서에 증빙 문서가 첨부된 경우에 한함

2017년 국가 예산에서, 특정 소득에 대하여 정부가 부담한 소득세의 연장

재무부는 2017년 국가 예산에서 특정 소득세에 대하여 정부가 부담한 연간 소득세를 규정하기 위해 No. 126/PMK.010/2017 ("PMK-126")을 발표했다. 지난해 재무부는 2016년 국가 예산에 대하여 유사한 소득세 감면을 No. 91/PMK.010/2016에 의거하여 규정하였다.

실질적으로, 2017년 국가 예산에서 정부에게 부담된 특정 소득 종류를 포함하여 PMK-126에 변경이 없었으며 다음과 같이 반복된다.

1. 국제 시장 인도네시아 외에 오프쇼로 발행된 증권에서 발행된 이자 또는 국채(국가채권 할인 포함) 형태의 소득.
2. 제3자가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국제 시장에서 국채의 발행 및 또는 환매/상환을 통하여 수령한 소득(인도네시아 밖에서 오프쇼로 발행된 증권, 환매/상환은 만기일 전에 현금 또는 교환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3자는 판매 대리인, 구매 교환 대리인, 외국 증권 거래소, 수탁자, 경영 대리인, 지불 대리인, 신용 평가 기관 및 국제 법률 컨설턴트가 포함된다. 또한
3. 사리아 국가채권과 관련한 2008년 법령 19호에 따라 사리아 원칙에 근거하여 발행된 사리아 국채 또는 수쿠크채권이며, 이는 사리아 국채 자산에 대한 오프쇼 분담비율을 표시한다.

PMK-126은 2017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간접세 및 세관 중점

수입관세, 수출 관세 및 세관 벌금의 이연

수입 또는 수출 관세 납부 미납 및 행정 벌금에 관한 관세청("DGCE")의 결정에 근거하여, 재무부는 수입관세, 수출관세 및 세관 벌금의 이연에 대한 No. 122/PMK.04/2017 규정을 발표하였다. PMK-122는 재정 곤란 있는 수입업자 및 수출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신청자의 재무제표 및 신용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연기 결정을 확정한다. PMK-122를 통해서, 재정 곤란 있는 회사는 지불 기한의 연장이나 분할 지불을 이용할 수 있다.

본 혜택을 이용하기 위해 회사는 DGCE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이후 15일 이내에 DGCE는 신청서의 승인 또는 거절을 결정해야 한다. 신청서가 승인된 경우 회사는 은행 보증 또는 관세 보증서의 형태로 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불 기한의 연장은 DGCE의 결정 서신이 발행된 날로부터 최대 12개월 까지 가능하며 한 달에 2%의 이자가 적용된다.

PMK-122는 2017년 10월 5일부터 시행된다.

연락처

Questions concerning any of the subjects or issues contained in this newsletter should be directed to your usual contact in our firm, or any of the following Tax Partners:

Melisa Himawan		
Tax Managing Partner	Business Tax and Corporate License	mehimawan@deloitte.com
Balim	Transfer Pricing	bbalim@deloitte.com
Cindy Sukiman	Business Tax	csukiman@deloitte.com
Dionisius Damijanto	Business Tax	ddamijanto@deloitte.com
Heru Supriyanto	Business Tax	hsupriyanto@deloitte.com
Irene Atmawijaya	Global Employer Services and Business Process Solutions	iatmawijaya@deloitte.com
John Lauwrenz	Business Tax	jlauwrenz@deloitte.com
Roy David Kiantiong	Transfer Pricing	rkiantiong@deloitte.com
Roy Sidharta Tedja	Business Tax and Business Process Solutions	roytedja@deloitte.com
Turmanto	Business Tax, Indirect Tax and Custom & Global Trade	tturmanto@deloitte.com
Yan Hardyana	Business Tax	yhardyana@deloitte.com

Deloitte Touche Solutions

The Plaza Office Tower, 32nd Floor
Jl. M.H. Thamrin Kav 28-30
Jakarta 10350, Indonesia
Tel: +62 21 2992 3100
Fax: +62 21 2992 8303
Email: iddttl@deloitte.com
www.deloitte.com/id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a UK private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DTTL"), its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id/about to learn more about our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Deloitte provides audit & assurance, consulting, financial advisory, risk advisory, tax & legal and related services to public and private clients spanning multiple industries. Deloitte serves four out of five Fortune Global 500® companies through a globally connected network of member firms in more than 150 countries and territories bringing world-class capabilities, insights, and high-quality service to address clients' most complex business challenges. To learn more about how Deloitte's approximately 264,000 professionals make an impact that matters, please connect with us on [Facebook](#), [LinkedIn](#), or [Twitter](#).

About Deloitte Southeast Asia

Deloitte Southeast Asia Ltd – a member firm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comprising Deloitte practices operating in Brunei, Cambodia, Guam, Indonesia, Lao PDR, Malaysia, Myanmar, Philippines, Singapore, Thailand and Vietnam – was established to deliver measurable value to the particular demands of increasingly intra-regional and fast growing companies and enterprises.

Comprising approximately 330 partners and 8,000 professionals in 25 office locations, the subsidiaries and affiliates of Deloitte Southeast Asia Ltd combine their technical expertise and deep industry knowledge to deliver consistent high quality services to companies in the region.

All services are provided through the individual country practices, their subsidiaries and affiliates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About Deloitte Indonesia

In Indonesia, services are provided by Deloitte Touche Solutions.